

수원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2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21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67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소리나

변론 종결 2022. 1. 27.

판결 선고 2022. 4.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67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2021. 7. 16."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54,5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42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2021. 7. 16."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판사김태호

판사장지용

판사이봉락

별지